

준비서면

사건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(서울고법 민사 제2부 나, 박흥우 부장판사)
원고 김명호,
피고 학교법인 성균관 대학,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이사장 권이혁

위 당사자간 교수지위확인 사건에 관하여
원고는, 민사소송법 제274조 1항, 2항(준비서면 기재사항) 및 제1심 민사소
송절차 안내서(갑 제13호증)에 따라,
[피고측 준비서면](#)(2006. 5. 12. 수령)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 및 입증을 준
비합니다.

석명사항 1의 다. “학생에 대한 평가 잘못을 이유로 피고 학교 측이 교수 징
계하거나 재임용 탈락시킨 예가 있는지”에 대하여

피고는 “없습니다”라고 하였습니다.

위 석명사항에 대한 피고의 답변은,

1. 문서제출명령(2005. 10 .26, 2005. 12. 30.)의 목적하는 바로서,
2. 아래의 대법원 판례와 징계사유에 의하면,

원고에 대한 정직3개월이 ‘평등의 원칙’을 위반한 것이며, **피고 성대
의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한 것**입니다.

가. 대법원 2000. 6. 9 선고 98두16613

판시사항: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
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

“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
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
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

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**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**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.”

나. 정직3개월을 견책으로 변경한 교육부가 인정한, 유일한 견책사유는 학점부여 관련입니다.([갑 제6호증](#))

3. 따라서, 원고의 학점부여를 패소이유로 삼은,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위법한 것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.
4. 뿐만 아니라, 이 것은 아래의 세 개의 증거들과 함께, 원고의 재임용 탈락이 95년도 성대입시출제오류 지적에 기인한 보복성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.

항소이유서 및 준비서면(2005. 10. 21)의 세 증거들

- (1) 해교행위 항목 중 ‘입학시험 채점 업무 시 배타적인 태도로 혼란야기’라는 징계 청원사유 ([갑 제22호 증](#))
- (2) 전국44개 189명 수학과 교수들은 위의 입시문제가 틀렸다는 의견을 법원에 서명 제출한 바 있습니다([갑 제8호증](#))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원고가 정직3개월에 대한 불복으로 교육부 징계재심 위원회에 재심했던 1995년 말 당시, 피고 성대가 제출한, 수학과 수학교육과 교수 일동의 증언 ([갑 제23호 증](#))에 의하면, 입시문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위증함과 동시에 “잘못이 없는 문제를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외부에 유포하는 사항은 학교를 곤경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이고 **해교행위라 생각되며 학교당국도 이에 단호히 대처한(정직 3개월) 바 있습니다.**”
- (3) 징계의결 요구하였던, 수학과 김미경 교수도 입시문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, 징계요구의 결정적인 원인이 입시출제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임을 시인하였습니다.([갑 제24호증](#), [녹취 자료](#))

결론

재임용 기대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(1977. 9. 28. 선고 [77다300](#))와, ‘**재임용 거부결정 무효확인**과 **교수지위확인**이 **동등하다**’라는 박흥우 재판장의 (4월 7일 변론준비기일에서의) [합리적 진술](#)에 따라, 원고는 피고 성대의 교수지위에 있음이 명백합니다.

2006년 5월 19일

위 원고 김명호

<http://geocities.com/henrythegreatgod/tocourt.htm>

서울고등법원(민사 제2부 나) 귀중